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5. 09. 17(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박경립, 이승우(혜일), 이재인, 정명섭, 정은우,
홍성걸, 홍승재 (이상 7명)
- ▣ 안 건 : 총 32건
 - 심의 24건 : 원안가결 6건, 조건부가결 6건, 부결 9건, 보류 3건
 - 검토 5건 : 원안가결 2건, 조건부가결 2건, 부결 1건
 - 보고 3건 : 원안접수 2건, 부결 1건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등 지정명칭 변경	공개
2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공개
3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2차)	공개
4	영광 불갑사 대웅전 주변 화장실 건립(2차)	공개
5	서울 동관왕묘 주변 주상복합 신축(2차)	공개
6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주변 관리사 신축	공개
7	서울 흥인지문 내 행사(국악 공연) 개최	공개
8	안동 하회 충효당 창호 보수(재심의)	공개
9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축사 부지 조성(2차)	공개
10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농가주택 신축	공개
11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및 창고신축	공개
12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 공원 조성(2차)	공개
13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주변 태양광에너지모듈 설치(2차)	공개
14	달성 태고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5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주변 사적비 건립(2차)	공개
16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618-2번지 외, 재심의)	공개
17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629-1번지 외, 재심의)	공개
18	산청 울곡사 대웅전 주변 소방용수용 지하수 개발(2차)	공개
19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변 향로전 건립(2차)	공개
20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3차)	공개
21	전주 풍패지관 주변 숙박시설 신축	공개
22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홍천강 생태하천 법면 보강공사	공개

23	산청 대포리 삼층석탑 주변 농업용창고 신축(3차)	공개
24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 주유소 신축	공개
【검토사항】		
25	서울 창의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26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검토	공개
27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방안 검토	공개
28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 유구 보호방안 검토	공개
29	구례 화엄사 각황전 활주 등 보강방안 검토	공개
【보고사항】		
30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부의안건 조정 기준(안) 보고[추가]	공개
31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사항 보고	공개
3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 예산 수덕사 대응전 주변 묘사채 신축(허가사항 변경) - 양산 통도사 대응전 및 금강계단 주변 보광선원 신축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5-09-001

1.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등 지정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보물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등 2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북 청주시 소재 보물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등 2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 ※ 2015년 건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2015.07.16)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015.07.29~08.27) 동안 별도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1.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46-3
- 지정일 : 1969. 07. 18.

2. 청원 안심사 대응전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169-28(사원리 271)
- 지정일 : 1980. 06. 11.

(2) 신청내용

연번	지정번호	명칭(당초)	명칭(변경)	비고
1	보물 제511호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淸原 桂山里 五層石塔)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淸州 桂山里 五層石塔)	

연번	지정번호	명칭(당초)	명칭(변경)	비고
2	보물 제664호	청원 안심사 대웅전 (淸原 安心寺 大雄殿)	청주 안심사 대웅전 (淸州 安心寺 大雄殿)	

○ 사유 :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원안가결 5명

2.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동 사항은 2015년 건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2015.07.16)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5.08.12~09.11)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분리 200-3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 기존 보호구역 : 예천읍 남분리 200-2 외 13필지 10,118.6㎡
 - 변경 보호구역 : 예천읍 남분리 200-2 외 25필지 24,235.6㎡
(12필지 14,117㎡ 추가)
- (4) 신청사유
 - 상습 침수구역인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배수시설 정비 및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사역 예상부지의 추가 발굴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추진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의견('15.06.25)

- 2012년 발굴조사 결과 드러난 주불전지와 연계한 추가발굴조사, 주변 역사 문화환경 조성, 상습침수 방지를 위해 신청한 보호구역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원안가결 5명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남본리	200-1	답	475	475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추가지정
2	남본리	215	답	910	910	○○○	안동시 정하동	추가지정
3	남본리	215-1	답	853	853	○○○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추가지정
4	남본리	215-2	답	2,975	2,975	○○○, ○○○, ○○○, ○○○	예천군 예천읍 노하동 예천군 예천읍 노하동 서울 종로구 신영동 서울 종로구 신영동	추가지정
5	남본리	215-3	답	1,058	1,058	○○○	예천군 상리면 사곡리	추가지정
6	남본리	215-4	답	695	695	○○○	문경시 여중1길	추가지정
7	남본리	215-8	답	232	232	예천군	예천군	추가지정
8	남본리	215-9	답	197	197	예천군	예천군	추가지정
9	남본리	216	답	1,308	1,308	○○○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추가지정
10	남본리	216-1	답	1,778	1,778	○○○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추가지정
11	남본리	216-6	답	2,975	2,975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추가지정
12	남본리	216-7	답	661	661	○○○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추가지정
합계				14,117	14,117			

3.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2차)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단독주택 건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건립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5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6.18)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584
 - 지정일 : 1978. 03.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77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71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립(총 6동)

- 건립개요

	1차('15.06.18)	금차	비고
신청부지	7,168㎡	3,412㎡	
건축면적 (연면적)	95.85㎡ (95.85㎡) 13동	95.85㎡ (95.85㎡) 6동	
구조	경량철골조	좌동	
층수/ 최고높이	지상1층 / 5.83m	좌동	
기타	- 자연석 석축 : 최고높이 8m - 단지 내 도로 조성 : 766㎡ (콘크리트 포장)	- 자연석 석축 : 최고높이 5.72m - 단지 내 도로 조성 : 458㎡ (콘크리트 포장)	

라. 지방자치단체(강화군) 의견

○ 별도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부결 6명

4. 영광 불갑사 대웅전 주변 화장실 건립(2차)

가. 제안사항

전남 영광군 소재 보물 「영광 불갑사 대웅전」 주변에 화장실 건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 건립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5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8.20)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불갑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영광 불갑사 대웅전
 - 소재지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불갑사
 - 지정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3m

○ 사업내용 : 화장실 건립

- 건립개요

	1차('15.08)	금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48.19m ² (48.19m ²)	34.97m ² (34.97m ²)	
구조	한식목구조	좌동	
층수/ 최고높이	지상1층 / 6.09m	지상1층 / 5.24m	

라. 지방자치단체(영광군) 의견

- 기존 화장실과 같은 규모로 화장실 증축하는 사항으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반정비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받을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5. 서울 동관왕묘 주변 주상복합 신축(2차)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동관왕묘」 주변에 주상복합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상복합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 1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에 해당됨.(다만,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 ‘12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06.21)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 (2) 대상문화재 : 서울 동관왕묘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승인동 238-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승인동 217-1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4m

○ 사업내용 : 주상복합 신축

- 건립개요

	1차('12.06.21)	금차	비고
대지면적	951.5m ²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564.82m ² (7,707.45m ²)	564.82m ² (8,064.97m ²)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층수/ 최고높이	지하3층, 지상 12층(옥탑1층 별도) / 40m	지하3층, 지상13층 / 40.6m	

라. 지방자치단체(종로구) 의견

- 별도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7명

6.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주변 관리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하남시 소재 보물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주변에 관리사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관리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 소재지 : 경기 하남시 교산동 산10-3
 - 지정일 : 1989. 04. 1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하남시 교산동 49-12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42m
 - 사업내용 : 관리사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54.00㎡(54.00㎡)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5.2m

라. 지방자치단체(하남시) 의견

- 별도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7. 서울 흥인지문 내 행사(국악 공연) 개최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흥인지문」 내 행사(국악 공연)를 개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구역 내에서 행사(국악 공연)를 개최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종로구청장
- (2)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창신동 463-2 일원(흥인지문 앞 잔디마당)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국악 공연
 - 행사날짜 : 2015.09.30.(수) 17시~18시
 - 행사내용
 - 전통국악공연 및 전통기예체험을 결합한 갈라형 콘서트
 - ※ 관람석(돛자리), 그 외 별도 무대 및 설치시설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종로구) 의견

- 별도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안전계획서 제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8. 안동 하회 충효당 창호 보수(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하회 충효당」 창호를 보수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의 창호를 보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당해 문화재에 해당됨.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8.20)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안동 하회 충효당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종가길 69 (하회리)
 - 지정일 : 1964. 11.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종가길 69 (하회리)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당해문화재
 - 사업내용 : 창호 보수
 - 안채 8개소, 좌익랑채 3개소, 우익랑채 4개소, 사랑채 7개소, 행랑채 5개소, 망창, 영창, 갑창 설치

라. 지방자치단체(안동시) 의견

- 충효당 내 창호 보수공사이므로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현지조사의견('15.09.04)

- 충효당 내부의 소형 창호 2개소는 설치를 제외하고, 안채 부엌과 고방사이의 창호는 형태를 조정하며, 창호 울거미의 두께는 축소 조정함이 좋겠음.
- 또한, 창호 설치 시 두꺼비집과 내부 벽체와의 마감을 고려하여 계획함이 좋겠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창호의 재질, 형태, 마감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9.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축사 부지 조성(2차)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보물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에 축사 부지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축사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4.16)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1번지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40-8번지 외 4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으로부터 407m

- 사업내용 : 측사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구분	기존	변경
부지면적	9,725m ²	6,382m ² (△3,343m ²)
절·성토	-11.43m ~ +9m	+2m ~ +6.5m
사업내용	자연석 석축 쌓기 H=5m, 법면 조성 H=3.4m~15m(3단)	자연석 석축 쌓기 H=4.8m, 법면 조성 H=3.4m~14m(3단)

라. 참고사항(현지조사 <2015.07.02>)

- 현황상 산의 경사 등이 심하므로 가능한 절토를 줄이고, 조경식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40-5번지와 연계된 사업이므로 현상변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 반영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10.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농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보물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5-1
 - 지정일 : 2010. 07. 0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185-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m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660㎡
 - 건축면적 : 주택 85.67㎡, 창고 25.92㎡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5.2m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구조/경사지붕

라. 지방자치단체(성주군) 의견

- 신라시대 사지 추정지역으로 시굴조사 선행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 등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1.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및 창고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소재 보물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영양 현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398-5
 - 지정일 : 1977. 08. 2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18 외 1필지(352-5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50m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1,044㎡
 - 건축면적(연면적) : 126.74㎡(126.74㎡) - 주택 99.74㎡, 창고 27㎡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6m
 - 구조/지붕 : 목구조/경사지붕

라. 지방자치단체(영양군) 의견

- 별도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12.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 공원 조성(2차)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보물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됨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6.18) : 부결
 - 역사문화환경에 맞게 조정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아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읍내동 255-5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아산시 읍내동 255-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구분	기존('15.06)	변경
정자 신축	팔각정 : A=15.64m ² , H=7.097m	사모정 : A=9m ² , H=7m
석축 설치		H=0.25m, L=3.4
배수로 설치		L=128m
조경공사	느티나무 이식, 소나무 5주, 모감주 나무 12주, 황매화 식재 57.72m ² , 명자나무 식재 66.57m ² , 잔디 식재 1,088.7m ² , 화강석 경계석 설치	느티나무 이식, 소나무 5주, 모감주 나무 5주, 잔디 식재 718.77m ² , 화강석 경계석 설치

라. 지방자치단체(아산시) 의견

- 별도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정자, 석축의 형태, 잔디 식재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13.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주변 태양광에너지모듈 설치(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 소재 보물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주변에 태양광에너지 모듈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태양광에너지 모듈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7.16)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1인
- (2) 대상문화재 :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835
 - 지정일 : 1977. 08. 2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842-4번지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0m
 - 사업내용 : 태양광에너지 모듈 설치 54개소
 - 대지면적 : 3,742㎡
 - 태양광모듈 : 3.66kw 54개소
 - * 변경 전 : H=3.08m, W=6.19m, 변경 후 : H=1.75m, W=6.19m

- 토사측구 : B=0.4m, L=175m
- 웬스 : H=1.8m, L=288m

라. 지방자치단체(영양군) 의견

- 별도 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4. 달성 태고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대구 달성군 소재 보물 「달성 태고정」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달성 태고정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 638
 - 지정일 : 1971. 12. 0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 67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90여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축
 - 부지면적 : 1,044m²
 - 건축면적(연면적) : 63.36m²(63.36m²)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5.4m
 - 구조/지붕 : 벽돌구조/한식기와지붕

라. 지방자치단체(달성군) 의견

- 별도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5.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주변 사적비 건립(2차)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국보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주변에 사적비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사적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4.16)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분황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분황로 94-11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분황리 839-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로부터 66m(기존 : 보호구역 내 설치)
 - 사업내용 : 사적비 건립
 - 기존(비신) : 높이 6.5m, 가로 3.4m, 폭 0.8m
 - 변경 : 동일함(위치변경 66m 이동)

라. 지방자치단체(경주시) 의견

- 당초 불허가된 사항과 비교할 때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더 이격되었으나 규모는 동일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규모, 모양, 문구, 위치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16.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618-2번지 외, 재심의)

가. 제안사항

충북 단양군 소재 보물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8.20)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471-11
 - 지정일 : 1964.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618-2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3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 : 234㎡(안채+사랑채)
 - 연면적 : 207㎡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4.8m

라. 현지조사의견('15.08.28)

- 신청부지는 사지와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할 남한강변의 경관과 지형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경관보호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현재 잘 보존된 강변의 경관과 수림대의 훼손이 우려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7.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629-1번지 외, 재심의)

가. 제안사항

충북 단양군 소재 보물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8.20)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471-11
 - 지정일 : 1964.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629-1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15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 : 99.84㎡
 - 건축구조 : 조적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6.3m

라. 현지조사의견('15.08.28)

- 신청부지는 탑의 전면 임야지로 경관과 지형이 잘 보존된 지역에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저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8. 산청 율곡사 대응전 주변 소방용수용 지하수 개발(2차)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 율곡사 대응전」 주변에 소방용수용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소방용수용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8.20)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율곡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산청 율곡사 대응전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034번지 외 1필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03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81m(기존 : 문화재로부터 50m)
 - 사업내용 : 소방용수용 지하수 개발
 - 굴착깊이 : 80m
 - 굴착지름 : 200mm
 - 취수계획량 : 50m³/일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19. 완주 송광사 대응전 주변 향로전 건립(2차)

가. 제안사항

전북 완주시 소재 보물 「완주 송광사 대응전」 주변에 향로전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향로전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6.18)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송광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완주 송광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26
 - 지정일 : 1996. 05. 2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2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임

○ 사업내용 : 향로전 건립

구분	1차	금차	비고
규모	건축면적 : 85.05m ² 지상1층	건축면적 : 95.91m ² 지상1층	당초 기존 종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향로전을 신축하는 계획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고 기존 종무소는 존치
구조 등	한식목구조, 5량가, 팔작지붕	동일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20.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3차)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보물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주변에 단독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5.21)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8.20)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768-6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768-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7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구분	1차	2차	금차	비고
건축면적	162.87m ² (주택 99.87m ² 창고 63m ²)	주택 162.87m ²	주택 99.87m ²	
구조	주택(벽돌구조) 창고(철골구조)	벽돌구조	벽돌구조	
층수 및 높이	지상1층 주택 6.3m 창고 5.5m	지상1층, 6.3m	지상1층, 5.8m	

라. 현지조사의견('15.09.10)

- 신청부지는 진입부와 문화재에서 잘 보이는 위치이고, 주변 지형과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신청건물이 신축될 경우 경관저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21. 전주 풍패지관 주변 숙박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전주시 소재 보물 「전주 풍패지관」 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7구역 “관련법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알라코리아
- (2) 대상문화재 : 전주 풍패지관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1-1
 - 지정일 : 1975. 03. 3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72-2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64m
 - 사업내용 : 숙박시설 신축
 - 건축면적 : 1,042.92㎡
 - 연면적 : 13,136.48㎡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하3층, 지상10층 / 42.25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7명

22.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홍천강 생태하천 법면 보강공사

가. 제안사항

강원 홍천군 소재 보물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홍천강 생태하천 법면 보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홍천강 생태하천 법면 보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홍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 소재지 :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76-26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9-2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8m
 - 사업내용 : 홍천강 생태하천 법면 보강공사
 - 법면보강 : 높이 1.8m, 길이 179.2m
 - 진입계단 : 3개소(폭 2m)
 - 호안식재 : 금국계화 3,486주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6명, 부결 1명

23. 산청 대포리 삼층석탑 주변 농업용창고 신축(3차)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 대포리 삼층석탑」 주변에 농업용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0.10.21) : 부결
 - 창고신축을 위하여 많은 양의 절·성토와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0.11.25) : 부결
 - 절·성토가 심하여 자연 및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산청 대포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573
 - 지정일 : 1992. 01. 1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산117-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60m

○ 사업내용 : 창고(2동) 신축(꽃감건조장, 농업용창고)

구분	1차('10.10)	2차('10.11)	금차	비고
건축면적	336m ² (1동 168m ² , 2동 168m ²)	288m ² (1동 144m ² , 2동 144m ²)	156m ² (1동 96m ² , 2동 60m ²)	
구조 및 층수 등	일반목구조 지상1층, 높이 5.1m	지상1층, 높이 5.18m	경량철골조 지상1층, 높이 4.9m	

라. 의결사항

- 부결
 - 절성토가 심해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24.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 주유소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장수군 소재 보물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5m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장수농업협동조합
- (2) 대상문화재 : 장수향교 대성전
 - 소재지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외 1필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55-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50m
 - 사업내용 : 주유소 신축
 - 건축면적 : 318㎡(캐노피 184.8㎡, 사무실 127.2㎡)
 - 연면적 : 396㎡(2층 휴게실 84㎡ 포함)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8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5-09-025

25. 서울 창의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 창의문」에 대한 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 창의문」을 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 (2) 대상문화재 : 「서울 창의문」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서울 창의문(서울 彰義門)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특별시)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산1-1번지 등 4필지
 - 조성연대 : 체성(1396년), 문루(1741년~1742년)
 - 지정면적 : 247.22m²
 - 양 식 : 체성과 문루(목구조, 우진각지붕, 이익공)

라. 현지조사의견(2015.09.08~09.09)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5. 9. 8.	대상문화재	서울 창의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성곽건축		
	② 문화재 명칭	서울 창의문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입지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악-낙산-남산-인왕산의 재사산 능선을 따라 축조 ○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통로 ○ 백악과 인왕 사이에 창의문 건축 <p><역사문화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축성 - 수도로서의 상징 및 체계, 형태를 갖춘 시설 - 1396년(태조 5)축조 - 성벽 / 성벽시설(곡성, 치성, 웅성, 성랑, 순심로, 봉수대) / 각자성석 / 성문(사대문과 사소문, 수문) / 문루로 구성 - 성벽의 높이 : 5~8m - 성벽의 길이 : 18.627km ○ 창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96년 성벽을 축조한 후 4대문과 4소문을 축조 -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현재 6개만 남아 있음 - 숙정문과 함께 북한산, 양주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 역할 		
	④ 연혁·유래 및 특징	<p><연혁, 유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문은 북문(北門) 또는 자하문(紫霞門)으로 불림 ○ 1396년(태조 5)에 서울성곽을 쌓을 때 사소문의 하나로 창건 ○ 북한, 양주방면으로 통하는 성문 ○ 1416년(태종 16) 풍수지리 주장자의 이곳 출입이 왕조에 좋지 않다 하여 폐문 ○ 1506(중종 1) 다시 개문 ○ 1623년 인조반정 대 능양군(陵陽君)을 비롯한 의군들이 이 문으로 궁 안에 들어가 반정성공 ○ 임진왜란 때 문루 소실 ○ 1741(영조 17년)~1742년에 중건 ○ 1743년에 인조반정 공신들의 이름을 현판에 새김 ○ 보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8년, 1970년(단청), 1983년, 1987년(협문, 지붕 변화), 1989년(단청), 1993년 보수 		

		<p><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대문과 사소문 중 6개가 남아 있는데 사소문중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을 유지 ○ 작은 규모로 축대를 쌓고 그 위에 문루 건축 ○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지붕 ○ 층안이 없고 전돌로 여장 축조 ○ 평주위의 주두위에 익공과 첨차를 끼우고 부주두를 엮은 다음 도리와 장여를 연결 ○ 대들보위에 첨차와 주두를 엮은 다음 종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중도리와 장여, 종도리와 파련대공을 설치 ○ 천장은 연등천장 ○ 지붕에는 취두, 용두, 잡상을 설치하고 추녀끝의 사례에는 토수를 끼움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문은 한양도성의 사대문, 사소문 중 6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사소문 중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을 유지 ○ 승례문, 흥인지문과 더불어 조선시대 문루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을 보여줌 ○ 조선시대 소문, 단층 문루건축의 양식을 그대로 보여줌 ○ 한양도성을 UNESCO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의문의 문화재 등급을 승격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창의문을 사적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p><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p> <p><보호물></p> <p><보호구역></p>
보호관리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한양도성은 현재 사대문, 사소문 중 6개가 남아 있다. 그러한 가운데 창의문은 사소문 중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양식 측면에서 승례문, 흥인지문과 더불어 조선시대 문루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된다.</p> <p>특히 최근에 한양도성을 UNESCO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의문을 사적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보물로 지정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p>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9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5. 9. 9.	대상문화재	서울 창의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성곽건축			
	② 문화재 명칭	서울 창의문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년 9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창건과 변천

창의문(彰義門)은 한양도성 사소문(四小門)의 하나이다. 한양도성은 1395년 9월 13일에 공사를 담당할 도성조축도감(都城造築都監)을 설치하였고 판사와 부사, 관관 및 녹사 등을 임명하였으며 정도전으로 하여금 성터를 정하도록 하였다.¹⁾ 이듬해 태조5년(1396) 1월9일에는 도성이 개기하였고 백악과 오방의 신에게 제사했다.²⁾ 전국 각지에서 118,070명의 백성을 징발하여 도성을 쌓았는데 구간별로 나누어 분담하였다. 백악(白岳)을 기점으로 시계방향으로 천자문의 천(天)자로부터 시작하여 조(弔)자까지 97구간으로 나누었다. 태조5년에 쌓은 성곽은 토성과 석성이 섞여 있었다. 전체 59,500자 가운데 약 30% 정도인 19,200자(약 6km)는 석성으로 쌓았는데 높이는 15자(약 4.7m)였다. 나머지 70%에 이르는 40,300자(약 12.5km)는 토성으로 쌓았는데 체감이 있어서 아래는 폭이 24자(약 7.5m)이고 위는 18자(5.6m)이며 높이는 석성보다 훨씬 높은 25자(약 7.8m)에 이르렀다. 1396년 9월 24일에는 성역 공사를 모두 마치고 인부들을 돌려보냈으며 봄철에 쌓은 구간 중에서 물이 솟아나서 무너진 곳을 석성으로 쌓고 간간이 토성을 쌓았다. 또 석성으로 낮은 곳은 더 높여 쌓았고 각 문에는 누문을 지었다. 이 때 사대문과 사소문의 이름을 모두 지었다.³⁾

방위		문의명칭	속칭	비고
4대문	북	숙청문(肅淸門)		후에 숙정문(肅靖門)으로 개칭
	동	흥인문(興仁門)	동대문(東大門)	고종때 興仁之門으로 개칭
	남	숭례문(崇禮門)	남대문(南大門)	
	서	돈의문(敦義門)		西箭門, 新門, 塞門으로도 호칭
4소문	동북	홍화문(弘化門)	동소문(東小門)	후에 惠化門으로 개칭
	동남	광희문(光熙門)	수구문(水口門)	
	서남	소덕문(昭德門)	서소문(西小門)	후에 昭義門으로 개칭
	서북	창의문(彰義門)		藏義門으로도 별칭

성곽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397년부터는 성문을 포함한 부속시설들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태조6년(1397) 1월 27일에는 동대문에 나아가 웅성자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4월 25일 상소에 따르면 근래의 공사로 인해 백성들이 실농하고 도성과 궁궐도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므로 풍년을 기다려 공사를 속개하자고 하였다.⁴⁾ 이를 왕이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다시 가을이 되어

1) 太祖實錄, 4年(1395 乙亥) 閏9月13日, 甲戌

2) 太祖實錄, 5年(1396 丙子) 1月9日, 戊辰

3) 太祖實錄, 5年(1396 丙子) 9月24日, 己卯/ “築城役訖, 放丁夫. 其春節所築, 有因水湧頽圯者, 以石城築之, 間以土城; 雲梯爲雨水所衝, 以致圯毀處, 復築之; 又置雲梯一所, 以分水勢, 石城有低下者, 加築之. 又作各門月團樓閣. 正北曰肅淸門, 東北曰弘化門, 俗稱東小門. 正東曰興仁門, 俗稱東大門. 東南曰光熙門, 俗稱水口門. 正南曰崇禮門, 俗稱南大門. 小北曰昭德門, 俗稱西小門. 正西曰敦義門, 西北曰彰義門”

서 경기도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공사가 시작되었다.⁵⁾ 그래서 이듬해인 태조7년(1398) 2월 8일에는 도성의 남문이 완성되었다.⁶⁾ 창의문도 이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조5년(1396)에 완성된 도성은 부분적으로 퇴락하여 25여년이 지난 세종3년(1421) 10월 13일에 도성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고 제2차 중창공사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때 유정현, 이원, 김승주를 총 책임자인 도제조로 삼았으며 박자청, 전흥, 이명덕, 이천, 조계생을 제조로 삼았다.⁷⁾ 세종대의 도성 중창공사는 1422년 2월 23일에 모두 마쳤다. 성은 돌로 쌓았는데 험지는 높이가 16자이며, 그 다음 높은 곳이 20자, 평지는 높이가 23자였다. 태조5년의 기록에는 석성구간의 성벽 높이가 15자였는데 세종대에는 험지가 16자로 가장 낮으며 평지는 23자로 성벽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문 2칸을 더 설치하여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서전문(西箭門)을 막고 돈의문(敦義門)을 설치하였다.

창의문은 숙정문과 함께 양주, 고양 방면으로 향하는 교통로였으나 1416년(태종16년) 풍수지리 설에 의해 폐쇄하여 통행을 금지시키다가 1506년(중종1년)에 다시 문을 열어 통행이 가능해졌다. 이때의 상황은 1446년(세종 28)의 기록에 남아 있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술사(術士) 이양달(李陽達)이 일찍이 말하기를 장의문(莊義門)이 경복궁(景福宮)을 임(臨)하여 누르고 또 해(害)가 있으니 사람의 자취를 통(通)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길을 막아서 소나무를 심고 항상 잠가 두고 열지 않은 지가 오랜데 지금 항상 통행(通行)하니 대단히 좋지 못하다. 이제부터는 명령을 받고 출입하는 외에는 항상 닫아 두고 열지 말라고 하였다. 임금이 음양(陰陽)과 풍수(風水)의 말을 매우 믿어서 이런 전지가 있는 것이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문루가 불타 없어졌으나 1741년(영조17년)에 복원되었는데, 이때 문루에는 인조반정(仁祖反正) 공신들의 이름을 판에 새겨 걸어놓았다. 1740년(숙종 28)의 기록에 따르면 “훈련 대장 구성임(具聖任)이 아뢰기를 ‘창의문(彰義門)은 바로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의군(義軍)이 경유하여 들어 왔던 곳이니 마땅히 개수하여 표시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내년 봄에 개수하라고 명하였다.”고 하였다. 이듬해 복원된 창의문에는 초루(哨樓)를 세웠다. 현대에 와서는 1958년 보수 공사, 1970년 단청 보수, 1983년 부분 보수, 1987년 협문 보수, 지붕 변화, 1989년 단청 보수, 1993년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1958년 공사는 연목과 부연의 일부교체, 마루 귀틀 및 청판의 일부교체, 기와변화, 석축 및 단청공사가 있었다. 1961년에는 양쪽 협문을 보수하였고, 석축과 석담공사가 있었다. 1970년에는

4) 太祖實錄, 6年(1397 丁丑) 4月25日, 丁未

5) 太祖實錄, 6年(1397 丁丑) 8月14日, 癸巳

6) 太祖實錄, 7年(1398 戊寅) 2月8日, 乙酉

7) 世宗實錄, 3年(1421 辛丑) 10月13日, 壬寅

내외부 단청을 새로 했고 바닥기와 및 장식기와의 교체 및 보수가 있었으며 서까래 부분교체, 협문수리, 여장 전벽돌 100% 교체, 건물 바닥 강회다짐 등의 공사가 있었다. 89년에도 단청공사가 있었으며 1993년에는 주변정비공사가 있었다. 이때 단청과 마루보수, 일부 강회다짐보수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에 지붕 번와 보수가 있었다.

□ 건축구조 및 양식

창의문은 정면 정칸이 5.2m이고 협칸은 2.6m이다. 측면은 두 칸으로 각각 2.6m이다. 정면의 협칸과 측면의 주칸이 같은 것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물이 이와 같은데 광희문만 정면 협칸(2.2m)과 측면(2.7m)로 서로 다르다. 사소문 중에서는 광희문이 가장 작으며 창의문이 가장 크다. 사대문인 돈의문과 가장 유사하다.

단층 문루인 경우에는 모두 이평주오량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공포형식도 익공형식이 일반적이다. 전후면 기둥을 건너지르는 대들보를 걸고 대들보위에는 화서문의 경우 동자주 없이 주두를 놓고 주두 위에 십자로 익공과 행공을 올려 종보를 받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도성의 창의문과 광희문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숙정문의 경우에는 대들보 위에 뜬 창방을 걸고 이에 의지해 종보를 걸었다. 대공은 대개 파련대공으로 했으며 종도리와 종장혀 아래에는 뜬창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도리의 위치는 대개 삼분변작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처마 내밀기와 관련이 있으며 문루건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둥높이는 중층과 단층에 관계없이 7-8자 정도가 일반적이다. 중층의 경우는 상층 기둥이 하층보다 높다. 상층은 승례문이 2.9m, 홍인문이 3.8m로 홍인문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팔달문의 경우는 홍인문과 비슷한 3.7m에 이른다. 단층의 경우에는 규모나 형식이 돈의문과 비슷한 화서문에서 2.3m였으며 광희문이 2.4m로 대개 8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중층문루를 제외하고 도성과 화성의 단층문루는 모두 익공형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광희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익공이다. 그러나 출목은 대부분 없으며 화서문만 1출목으로 3포집이다.

표66.도성문루의 규모 비교표

구분	사대문				사소문			
	동	서	남	북	동북	동남	서북	서남
명칭	홍인문	돈의문	승례문	숙정문	혜화문	광희문	창의문	소의문
현황	1869년중건	1915년멸실	1448년개건	1976년복원	1992년복원	1976년복원	1741년중건	1914년멸실
층수	중층	단층	중층	단층	단층	단층	단층	단층
평면규모	5×2	3×2	5×2	3×2	3×2	3×2	3×2	3×2
전체높이	20.3	-	19.0	12.1	12.1	11.9	12.2	-
정면주칸	1층정칸 7.1 1층협칸 3.8 1층퇴칸 3.6 2층정칸 7.1 2층협칸 3.8 2층퇴칸 2.6	정칸 5.6 협칸 2.7	1층정칸 7.1 1층협칸 3.9 1층퇴칸 3.9 2층정칸 7.0 2층협칸 3.9 2층퇴칸 3.1	정칸 4.1 협칸 2.1	정칸 5.0 협칸 2.5	정칸 3.1 협칸 2.2	정칸 5.2 협칸 2.6	-
측면주칸	1층 3.6 2층 2.6	2.7	1층 3.9 2층 3.1	2.1	2.5	2.7	2.6	-

표67.도성문루의 구조형식 비교표

구분	사대문				사소문				화성	
	동	서	남	북	동북	동남	서북	서남	남	서
명칭	홍인문	돈의문	승례문	숙정문	혜화문	광희문	창의문	소의문	팔달문	화서문
현황	1869년 중건	1915년 멸실	1448년 개건	1976년 복원	1992년 복원	1976년 복원	1741년 중건	1914년 멸실	1796년 창건	1796년 창건
층수	중층	단층	중층	단층	단층	단층	단층	단층	중층	단층
가구	심고주 오량	이평주 오량	심고주 오량	이평주 오량	이평주 오량	이평주 오량	이평주 오량	-	심고주 오량	이평주 오량
기둥높이	1층 2.4 2층 3.8	2.4	1층 2.1 2층 2.9			2.4		-	1층 2.2 2층 3.7	2.3
전체높이	13.4		12.2	6.2	6.7	5.9	6.2	-	13.2	6.3
지붕	우진각 겹처마	우진각 겹처마	우진각 겹처마	우진각 겹처마	우진각 겹처마	우진각 겹처마	우진각 겹처마	우진각 겹처마	우진각 겹처마	팔작 겹처마

□ 지정가치

한양도성의 4소문 가운데 문루가 임란이후 1741년에 중창되어 큰 변형 없이 남아 있는 유일한 건물이 창의문 문루이다. 창의문은 사대문에 해당하는 돈의문과 규모와 형식에서 거의 일치할 정도로 소문에서는 중요한 문이었다. 화성의 화서문과도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돈의문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실물이 창의문과 화성의 화서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창의문은 한양도성의 사소문 가운데 진정성이 남아 있는 유일한 건물이라는 것에 가치가 있다. 또 보수 이력을 살펴보았을 때 서까래와 기와, 단청, 협문, 마루, 바닥에 대한 수리는 있었으나 구조를 해체하는 중대한 수리는 없었기 때문에 1741년의 모습이 고스란히 살아있어서 당시

의 문루 건축술을 볼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창의문은 한양도성의 문루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 양식적 진정성과 조선후기 도성 문루의 형식을 보여주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물로 지정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5. 9. 9.	대상문화재	서울 창의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성곽건축			
	② 문화재 명칭	서울 창의문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년 9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연혁 및 개요

한양도성은 1396년(태조 5), 백악-낙산-남산-인왕산의 내사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수축과 보수를 거듭하면서 511년 동안 그 원형을 유지해 왔다. 전체 길이 약 18.627km에 이르며, 구성요소는 체성과 여장으로 구성되는 성벽, 곡성, 치성, 옹성, 봉수대 등의 성벽시설, 성문(사대문과 사소문, 2개의 수문)과 문루이다.

한양도성의 성문과 문루는 조선시대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유교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태조는 1396년 성벽을 축성한 후 성문과 문루를 만들기 시작했다. 동서남북 방향에 4개의 대문(사대문)과 대문 사이에 4개의 소문이 축조됨으로서 수도와 지방간의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양도성의 성문과 문루는 인왕의 남쪽 기슭에서 목멱의 북서쪽 기슭 사이에 돈의문, 소의문, 숭례문이며, 낙산의 남쪽 기슭과 목멱의 북동쪽 기슭 사이에 흥인지문과 광희문이며, 백악과 낙산 사이에 혜화문이며, 그리고 백악과 인왕 사이에 창의문이 각각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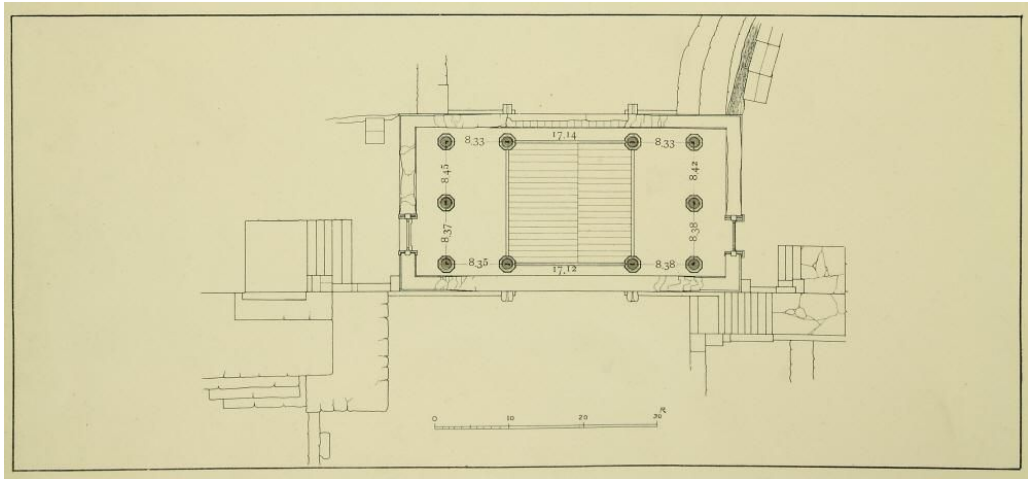
초축 당시에는 사대문과 사소문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의 피해,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현재에는 6개의 성문(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창의문, 광희문, 혜화문)이 남아있다. 이중 창의문은 1396년(태조5)에 축조되었다. 백악산과 인왕산 중간에 위치하며 속칭 북소문(北小門) 또는 자하문(紫霞門)으로도 불린다. 숙정문과 함께 북한산·양주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로 사용되었다. 1416년(태종16년) 폐쇄되어 통행이 금지되었다가 1506년(중종1년)에 다시 문을 열어 통행이 가능해졌다.

역사적 사건으로는 1623년 인조반정 때 능양군을 비롯한 반정군들이 이 문을 부수고 궁안에 들어가 반정에 성공하였던 무대이기도 하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문루가 불타 없어졌으나 1741년(영조17년)부터 1742년(영조18년) 사이 중건되었다. 1743년에는 인조반정(仁祖反正) 공신들의 이름을 판에 새겨 문루 위에 걸어놓았다. 이러한 축조사실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1958년 보수 공사, 1970년 단청 보수, 1983년 부분 보수, 1987년 협문 보수, 지붕 변화 1989년 단청 보수, 1993년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 특징

육축은 숭례문이나 흥인지문과 같은 장대석으로 축조하고 내부의 등성시설을 설치하였는데, 북쪽의 등성시설은 ‘ㄷ’자형의 일반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남쪽은 낮은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이것은 『조선고적도보』 11권에 나오는 창의문 평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중건 이후 변형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문(북문) 평면도 (『조선고적도보』 11권, 조선총독부, 1931)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이고, 여장은 총안이 없는 전돌로 축조되어 있다. 가구 방식은 평주의 주두 위에 바로 대들보를 얹고 이 위에 다시 화반형 부재를 놓아 마룻보와 중도리의 짜임을 받쳤다. 마룻보 위에는 사다리꼴에 가까운 파련대공을 놓아 뜬창방·장여·도리로 짜여진 마룻도리를 받고 있다. 천장은 서까래를 모두 노출시킨 연등천장이다. 처마는 겹처마이고, 지붕 물매는 가파르지 않다. 지붕마루는 양성마루로 하고, 그 위에 취두·용두·잡상을 배열하고 추녀 끝의 사례에는 토수를 끼웠다.

□ 지정 가치

한양도성에는 사대문과 사소문 중 6개의 성문과 문루가 남아 있다. 한양도성의 성문의 위치는 14세기 말 성곽과 함께 결정되었으며, 성문의 위치와 문의 폭을 기준으로 수도 한양의 가로체계 및 도로의 폭이 결정되었다.

도성의 문루는 현재 승례문, 흥인지문, 창의문 만이 남아있으며, 각각 조선시대 문루 목조건축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규범적 사례이다. 승례문은 조선 초기, 흥인지문은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중층 목조건축으로 각각 조선시대 문루 목조건축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규범적 사례로, 승례문과 흥인지문은 현재 국보 제1호와 보물 제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18세기에 중건된 창의문 역시 한양도성의 소문 문루 건축양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 사소문 중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으며 18세기 조선시대 문루 목조건축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규범적 사례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창의문은 조선시대 소문, 단층 문루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목조구법과 양식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며, 육축과 등성시설 또한 잘 보존되고 있어 그 가치와 역사적의미가 크다. 따라서 창의문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

26.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국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토지를 탐방객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창녕군수

(2) 대상문화재 :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

○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 기존 보호구역 : 창녕읍 교상리 28-1 등 6필지 4,136.8㎡

○ 변경 보호구역 : 창녕읍 송현리 179-17 등 4필지 추가(1,084㎡ 추가, 총 5,220.8㎡)

※ 기존 보호구역과 추가 보호구역 사이의 도로부분은 빠져 있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창녕읍 교상리	28-33	임	251	251	국유	기존
2	"	1	대	557	198	○○○ 외 1인	
3	"	3-1	대	357	119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4	"	4-1	대	635	169	○○○	기존
5	"	28-1	임	3,296	3,293.8	국유	
6	"	28-45	임	106	106	"	
7	창녕읍 송현리	179-17	대	294	294	○○○	추가
8	"	179-22	대	292	292	"	
9	"	179-23	대	141	141	"	
10	"	180-5	대	357	357	"	
합계				6,286	5,220.8		

(4) 신청사유

- 확대지정 신청지는 노후된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 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의견('15.09.11)

- 신청부지는 척경비가 자리 잡고 있는 만옥정 공원의 인접지역으로 현재 폐가 등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 진흥왕 척경비는 이전된 문화재이나, 원위치가 인근에 있고 기존 폐가 등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이전된 문화재이므로 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이 낮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27.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존방안’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보고(2015.05.21) : 정밀안전진단 실시보고

다. 검토요청 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국립문화재연구소장)

(2) 대상문화재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 지정일 : 1962. 12. 20.

○ 추진경과

- ('10, '14) 보존처리 필요성 제기

· 국가지정 문화재 정기조사 및 문화재특별종합점검

- ('14.07) 국립중앙박물관 사업 수행 및 이관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국장급 회의 결과에 따름

· 3차원 스캔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 계획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사업 이관

- ('15.02) 사업 계획보고 및 기술자문단 검토회의

- ('15.04.~08.)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 : 공주대학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3) 검토내용

○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 결과

- 석탑 이진 및 보수

- 석탑은 현재까지 9회 이진 및 이동을 반복함
- 한국전쟁 시 포탄피해로 파손된 부재를 1957년 수리 복원함

- 석탑 재질특성 및 풍화도 평가

- 주요 구성석재는 세립질 흑운모화강암이며 다섯 종류로 세분됨
- 중간 풍화(MW)~높은 풍화단계(HW)에 속하며 부분적으로 취약한 물성임
- 시멘트 모르타르 복원부재의 점유율은 10.6%임

- 상륜부 진단 결과(상륜부 및 옥개석)

- 시멘트 몰탈 복원부재 점유율이 가장 높고(50.9%) 탈락 및 박리가 다수 확인됨
- 총 41개의 철심을 삽입하여 부재를 복원하였고 철심 부식도는 높음
- 흑화 및 백화오염물은 보수 모르타르에서 기원된 방해석 및 석고가 주원임

- 탑신부 진단 결과(탑신과 상층기단)

- 남면과 동면의 탑신부에서 다량의 박리가 확인됨(41.5%, 12.4%)
- 탑신석과 상층기단 오염 또한 시멘트 모르타르 기원물질에 의한 것임

- 기단부 진단 결과(하층기단과 지대석)

- 기단부 지대석과 괴임석 분리는 마지막 복원 시 원형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됨
- 석탑 일대는 연약한 토층지반임

○ 석탑 보존방안

- 구성 석재는 보존처리 후 재사용 가능하며 탑신석 문양부분 등은 집중처리 실시
- 몰탈 복원부는 기술적 범위 내에서 몰탈 해체 및 동일석재 복원 실시
- 부재 해체 후 기단부 원형복원과 장기적 보존을 위한 구조보강 실시
- 토층지반의 구조안정성 증대를 위한 지반보강 실시

○ 석탑 보존방법 : 석탑 전면 해체 후 수리, 복원

- 해체방법 : 표면임시강화처리 → 해체 전 손상부 보강 → 해체 및 보관
- 해체 후 과학적 보존처리 및 원형 복원

라. 검토의견(국립문화재연구소)

- 금번 원주 범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방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기술자문단의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한 사항임
- 해체 후 수리 및 복원을 위해서는 경천사 십층석탑 이전 복원사업('95~'05)과 같이 선행 사례가 있고 처리 시설 및 기술력 등 제반사항을 확보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보존처리 후 탑의 적정위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할 것(실내보관을 전제로 한 보수가 되지 않을 것)
 - 기존 보수에 사용된 모르타르 제거 시 단단히 접합되어 있는 부분은 제거에 신중을 기할 것
 - 보충 신재의 선택 및 범위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28.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사업 유구 보호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1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장흥군 소재 보물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사업 관련 유구 보호방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장흥군 소재 보물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사업 관련 유구 보호방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사업명 : 장흥 천관사 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사업
- (2) 대상문화재 :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39번지
 - 지정일 : 1984. 11. 30.
- (3) 유구 보호방안
 - 유구보호층 설치(원레벨에서 0.55m 입상)
 - 유구 ▶ 부직포설치 ▶ 마사토다짐 ▶ PE필름 ▶ 버림콘크리트 ▶ 매트설치(T500)

라. 참고사항(그간의 진행사항)

- 2014.11.20 : 건축문화재분과 검토(조건부 가결)
 - 관계전문가의 추가 자문을 받아 추진
 - 고려시대 양식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발굴기관의 시대별 유구를 확인
 - 화재 이전의 중수 기록에 대한 확인

- 주불전 터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후 재검토
- 2015.02.25 : 건축문화재분과 검토(보류)
 - 발굴조사 약보고서 등 서류 보완 후 재심의
- 2015.04.16 : 건축문화재분과 검토(조건부 가결)
 - 조선초기 및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하되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 시행
- 2015.08.06 : 설계심사위원회 심사
 - 유구 보호층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기술지도단에서 방안 도출 시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검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
 - 주불전지 규모 축소 등은 봉정사 대응전을 포함한 조선 초기양식 사례를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기술지도단 의견을 수렴 사업을 시행토록 함
 - 석탑 해체 및 이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 기술지도단의 의견을 거쳐 처리하도록 함
 - 단, 시공 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지도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치도록 함.
- 2015.09.03 : 기술지도 자문회의
 - 유구보호 관련
 - 현 상태에서 주불전을 건축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선대 유구의 파괴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조사결과 주불전지는 연약지반으로 기초 터파기 할 경우 지정의 규모가 커지므로 유구를 보호하고 매트기초를 설치하여 주불전을 건축함이 좋겠음
 - 주불전 규모와 양식
 - 주불전의 규모와 양식은 조선 전기의 주불전임을 고려하여 안동 봉정사 대응전의 공포 규모와 양식을 따르되, 처마내밀기는 기단 길이에 맞추고, 구조적 안정성을 위하여 내부의 변작을 조정하도록 함
 - 석탑 이전
 - 석탑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일부 파손된 지대석은 보강하여 재사용할 것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매트외 두께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29. 구례 화엄사 각황전 활주 등 보강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에 대하여 2014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활주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대한 보강방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구례군 소재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에 대하여 2014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활주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대한 보강방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5.05.21) : 조건부가결
 - 구조모니터링을 연2회에서 4회로 확대
 - 활주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대하여 보강방안을 마련함
 - 향후 보수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함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구례 화엄사 각황전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 지정일 : 1962. 12. 20.
- (2) 활주 등 보강방안
 - 1안) 활주 신설
 - 2안) 가설재 보강

라. 현지조사의견(2015.08.05)

- 활주는 변형이 심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교체가 필요함.
- 그 외 추녀, 서까래 등의 구조적 보강은 각황전을 해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추후 검토가 필요함.
- 위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안으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5-09-030

30.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부의안건 조정 기준(안) 보고[추가]

가. 추진배경

- 제7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시 승인받은 현상변경허가 자체 처리 검토 대상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문화재위원회의를 추진하고자 함

나. 추가대상

- 폭죽·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3일 이내 행사
 - 단 사안에 따라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
- 산불소화시설의 설치
 - 「산불소화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산림청) 제6조(설계심의회 개최)에 따라 문화재 관련분야 전문가가 설계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했을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자체검토 대상 변경안

기 존 조 정 안 [2015. 7. 16.]	변 경 조 정 안	적용지역
1. 12m 미만의 건축행위 - 원지형 보존지역 제외	좌 동	원지형 보존지역 제외
2. 기존건물 규모 이내의 개축·재축	좌 동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2-1. 기존 건물면적 이내의 증축	좌 동	공통적용
2-2.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좌 동	공통적용
3. 1m 이하의 절·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	좌 동	공통적용
3-1. 부지조성 - 절성토·석축쌓기·배수로정비 등	좌 동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기 존 조 정 안 [2015. 7. 16.]	변 경 조 정 안	적용지역
4. 공작물의 설치 - 담장, 기념비, 전신주, 송전탑 등	좌 동	역사환경 보전지역 내
5. 벌채·식재·수목정비 - 허가시 조건 : 관계전문가 자문 (단, 경미한 사항으로 재해 방지를 위한 경우 제외)	좌 동	공통적용
6. 재해 등에 의한 긴급보수 사업으로 당해문화재가 아닌것	좌 동	공통적용
7. 도로·진입로·등산로·교량 설치	좌 동	역사환경 보전지역 내
7-1. 확장이 없는 도로의 보수·포장 및 기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관로공사	좌 동	보호구역 내
8. 가설건축물의 설치(단, 사용기간 명시)	좌 동	역사환경 보전지역 내
2-2.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 당초 허가 취지에 맞는 범위내의 변경허가 추진	좌 동	공통적용
9. 당해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탁본 - 관계전문가 자문 조건	좌 동	보호구역
10. 전각보수·리모델링·용도변경 - 관계전문가 자문 조건	좌 동	공통적용
11. 지하매설물(관로, 배관, 지하수개발 등)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건 (단, 매장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지역은 제외)	좌 동	공통적용
12. 공공시설(공원조성, 부설주차장 설치, 안내판정비 등)의 설치 - 필요시 자문	좌 동	공통적용

기 존 조 정 안 [2015. 7. 16.]	변 경 조 정 안	적용지역
신 설	13. 폭죽·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3일 이내 행사	보호구역
신설	14. 산불소화시설의 설치 - 「산불소화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산림청) 제6조(설계심의회 개최)에 따라 문화재 관련분야 전문가가 설계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했을 경우	공통적용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접수 7명

31.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사항 보고

가. 개요

- 개정사유 : 문화재위원회 심의기준,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신설을 통해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상규정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문화재청 예규 150호)
- 시행일 : 2015. 09. 01.
-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록에 신청인 의견란 신설 등

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유
재심의 근거 명확화	▪ 중요한 사실의 누락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분과간사는 재심의 요청 가능. 단, 1회에 한함.	권리구제 기회확대
의견진술	▪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의견진술 기회제공 - 회의록에 신청인의 의견란 신설	위원회 심의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제고
심의기준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현상 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별표2 기준에 따라 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투명성·합리성 제고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라. 의결사항

- 부결
 - 위원의 재심의 요청 권한 부여, 4조의 2에 대한 내용 보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② (생략) <신설></p>	<p>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문화재청 훈령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별표2]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② (생략)</p> <p>③ <u>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사항은 제2항에 의한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u></p> <p>1. 「<u>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기준</u>」 [별표 1]</p> <p>2. 삭제</p> <p>④ <u>분과위원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다시 부의할 수 있다.</u></p>	<p>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과별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단, 제2항에 따라 개별 분과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1. 「<u>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대상</u>」 -----</p> <p>2. 삭제</p> <p>④ <u>간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u></p>

현행	개정안
<p>제5조(안전 구분) ① (생략)</p> <p>② 안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전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사항 :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u>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u>제8조제1항제1호, 제7호, 제10호, 제11호</u>에 해당하는 사항 3. <u>보고사항</u> :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p>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p><u>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u></p> <p><u>단 재심이는 1회에 한한다.</u></p> <p><u>4조의2(의견진술)분과위원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전의 심의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제5조(안전 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제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u> ----- 2. -----<u>제8조 제1항 제1호</u> ----- 3. <u>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사안이 경미하거나,</u> -- <p>제9조(의결서 작성)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서 신설></p> <p>3.·4. (생략)</p> <p>② (생략)</p> <p>③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u>재심의 요건을 의결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u></p>	<p>2. ----- ----- ----. 단, 제4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3.·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부결사유를</u>----- ----- -----.</p>

3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국보 「예산 수덕사 대웅전」 주변 요사채 신축 현상변경 허가변경 등 2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비고												
소 계		2건	변경허가 2건													
예산 수덕사 대웅전	충남 예산 (수덕사 주지)	○ 요사채 신축(허가사항 변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기존</th> <th style="width: 50%;">변경</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 : 645㎡</td> <td>-대지면적 : 645㎡</td> </tr> <tr> <td>-건축면적 : 72.0㎡</td> <td>-건축면적 : 72㎡</td> </tr> <tr> <td>-건축구조: 한식목구조</td> <td>-건축구조: 한식목구조</td> </tr> <tr> <td>-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6.14m</td> <td>-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6.6m</td> </tr> <tr> <td>-후면 석축높이 : 1.2m</td> <td>-후면 석축높이 : 1.8m</td> </tr> </tbody> </table> ※ 분할측량에 의한 지적선 변경	기존	변경	-대지면적 : 645㎡	-대지면적 : 645㎡	-건축면적 : 72.0㎡	-건축면적 : 72㎡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6.14m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6.6m	-후면 석축높이 : 1.2m	-후면 석축높이 : 1.8m	변경허가	'15.09.16
기존	변경															
-대지면적 : 645㎡	-대지면적 : 645㎡															
-건축면적 : 72.0㎡	-건축면적 : 72㎡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6.14m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6.6m															
-후면 석축높이 : 1.2m	-후면 석축높이 : 1.8m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비고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경남 양산 (통도사 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광선원 신축(허가사항 변경) -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645,645-3,4번지 · 변경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645, 645-5 - 내용 : 50m정도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방, 동요사, 사요사, 요사채, 세면실, 화장실, 대문 설치 ·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 주변정비 : 한식담장 및 석축 	변경허가	'15.09.16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접수 7명